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5597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798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2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것이다"를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기간 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